

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6. 8. 2.>

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[]신고서 []변경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V"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

차 관 도입자	상호 또는 명칭			
	주소			
차 관 제공자	상호 또는 명칭(영문)			국적
	주소(영문)			
차관의 내용	차관금액	원 (USD 상당)		
	차관조건	거치기간	상환기간	
		연 이자율	기타	
차관방법	현금	자본재	기타	
차관용도	금번 투자지역			
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	이미 신고된 내용		변경 후 내용	

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신고인 (또는 대리인) _____ (전화번호: _____) _____년 _____월 _____일 (서명 또는 인)

하나은행장 귀하

신고인 귀하

신고번호 :

※ 위와 같이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.

하나은행장 직인

_____년 _____월 _____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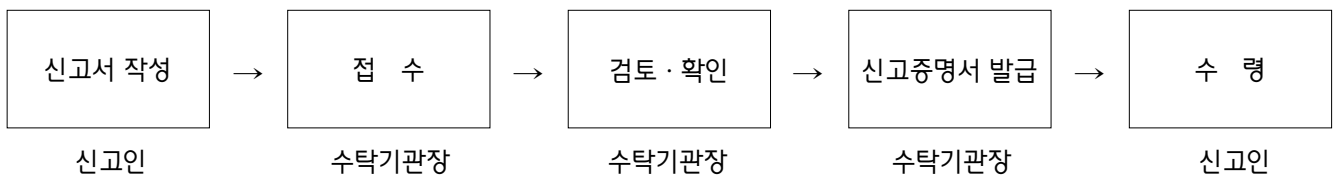


첨부서류	<p><신고인 경우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.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. 차관계약서 사본 1부 4.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(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해외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 <p><변경신고인 경우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(차관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. 변경계약서 사본 1부 4.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(차관제공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이 신고증명서는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, 다른 법령에 따라 인·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